

[축사]

『경찰법연구』 창간을 축하하며



金 東 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본 학회 고문)

『警察法研究』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경찰활동의 법치화와 경찰작용의 법리적 연구에 뜻을 같이하는 젊은 경찰실무가들과 다양한 분야의 법학연구자들이, 경찰활동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인권문제를 學際的으로 연구하고 그를 통해 경찰법의 발전과 국민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고자 할 목적으로, 韓國警察法學會의 이름 아래 하나로 모였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 1년 전이었는데, 이제 그 동안의 학문적 성과가 모여 『警察法研究』의 이름으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韓國警察法學會와 『警察法研究』에 대한 평가와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시도와 성과가 어느 한 법학분야에서의 단발적인 모색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법학분야를 넘나들고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며, 어려운 연구여건 아래에서도 꿩기있게 그리고 묵묵히 자신들의 믿음을 실천해 온 젊은 연구자와 실무가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비록, 열의와 열기가 앞서, 표현의 세련됨과 논리의 정치함이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을 지는 모르나, 조야하다거나 졸렬하다고 잘라 말할 수 없는 것은, 여태껏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의 호기심과 열정을 나 자신 함께 지니고 있는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내가 韓國警察法學會의 고문직을 기꺼이 수락하고, 또

『警察法研究』의 창간에 즈음하여 진실로 기쁜 마음으로 축하의 말을 전하게 되는 커다란 이유이기도 하다.

행정법학에 있어서 경찰작용은 가장 연륜깊은 참조영역이자, 국가작용 전체를 설명하고 조망하게 하는 연결통로이기도 하다. 행정법학에서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권력적으로 사람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으로 한정하여 이해되고 있지만,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는 공공의 복지라는 국가목적 내지 그러한 국가목적에 위해 행해지는 국가작용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을 만큼, 행정법의 규율대상이자 행정법학의 고찰대상인 국가작용을 상징하는 키워드였다. 막상 이러한 경찰작용 일반을 행정법학의 핵심적 고찰대상으로 삼으면서도, 행정상의 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行政警察作用에만 초점을 맞추고, 형사사법권의 보조적 작용으로 행해지는 司法警察作用이라든지, 경찰행정의 실제적 집행실무에 대해서는 애써 관심의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을 느끼던 차에, 한국경찰법학회의 발족과 그 연구산물로서의 『警察法研究』의 발간은 기나긴 가뭄 속의 빗줄기처럼 오랜 갈증을 씻어주는 청량한 소식이었다. 나 자신 경찰행정법영역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왔던 법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경찰법학회의 회원들과 이 기쁨을 같이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기다림과 반가움 때문이다.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딘 韓國警察法學會가 앞으로 경찰법연구 및 경찰실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구성원들의 진지한 연구자세와 노력의 결실로서의 『警察法研究』가 다시금 지속적인 연구작업이나 활발하고 진지한 토론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진심으로 기쁘고 든든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警察法研究』 창간호의 발간에 축하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2003년 6월 1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 동 희